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16.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0. 16.
다. 상 정 일 자 : 2007. 10. 22.(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가. 제안사유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보공개에의 정의(안 제2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안 제5조)
- 비용부담(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상정한 조례안으로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정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0조 심의회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③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으로

○ 금번 조례안 중 제10조 ①항에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7인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타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자결재 문서방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전자결재 문서내 비밀문서 외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시정홍보 및 투명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본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강현삼 의원)
 - 현재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심의를 해서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하여 운영을 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련한 법적 소송도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 범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지난해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강현삼 의원)

- 10건 정도 됩니다.(자치운영팀장 이춘호)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 끝.